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백종헌 · 김상훈 · 박형수
김태호 · 권영진 · 서천호
이양수 · 안상훈 · 윤재욱
김기웅 · 안철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‘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’의 이용자 신청, 서비스 제공,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‘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’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설)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(이하 “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,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현황 관리
2.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의 발급, 이용 및 비용 정산·지급 현황 관리
3.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교육 및 관리·평가
4. 그 밖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운영 및 통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

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2조의2(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(이하 “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,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현황 관리</u> <u>2.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의 발급, 이용 및 비용 정산·지급 현황 관리</u> <u>3.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교육 및 관리·평가</u> <u>4. 그 밖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운영 및 통계</u>

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